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김종양 · 김정재
이종배 · 김선교 · 박형수
백종현 · 서천호 · 김기웅
안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,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유료도로관리청 등”이라 한다)는 통행료 감면, 미납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·수납·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,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.

다만,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,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,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.

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,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

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.

이에,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수납 또는 강제징수”를 “수납, 강제징수 또는 환불”로, “통행한”을 “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우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인등록번호”를 “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4.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를 말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,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
5. (생략)
- ③ (생략)

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법인등록번호
(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)

5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